

## 건설업체의 제3섹터 출자와 시공자 선정의 합리화 방안

제3섹터(민관 합작 법인)는 1992년 이후 설립이 법제화된 이래 사업 선정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94년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공공 사업의 민간 위탁 방식에 의한 민자 유치는 정부가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SOC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실시 단계에서의 문제점(민자 유치 사업에 대한 업계의 소극적인 반응과 협상의 어려움, 특혜 시비 우려 등)에 직면하면서 다시금 화물터미널 시설 공급 등에 제3섹터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SOC 민자 유치를 위탁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섹터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3섹터는 공공이 직접 출자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위탁 방식에 비하여 특혜 시비의 여지가 적다. 또한, 위탁 방식에서 야기되는 사업 비용과 수입에 관한 계산상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지도 않는다. 반면, 제3섹터는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기가 어려워 민간이 참여하기를 꺼리는 면이 있다.

제3섹터 사업은 성질상 공공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어떤 형태로든 공공의 경영 개입이 있다. 문제는 공공의 개입이 있더라도 제3섹터가 어떻게 자율성을 유지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치는 제3섹터 공사의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제3섹터 운영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근본 정책 방안을 시공자 선정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제3섹터 출자자간의 역할 분담제는 시공자 결정 방법의 합리화와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 제3섹터 운영의 본질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